

업무 방침: 증오 범죄		
업무 방침 코드: HAT 1	발효일: 2018 년 3 월 1 일	교차 참조: ALT 1 CHA 1 VIC 1 VUL 1 YOU 1.4

“증오 범죄”는 범행 동기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인의 편향이나 편견 또는 증오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형사 범죄이다. 증오 범죄는 타인에 대한 편협성과 불관용이 동인이며, 중대 문제로 간주된다.

형법에는 증오 범죄와 관련한 특정 범죄와 양형 조항이 있다. 범죄 조항은 증오가 동기인 특정 유형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런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증오가 범행 동기인 범죄의 경우 그 동기가 양형의 가중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혐의 평가 지침(Charge Assessment Guidelines, CHA 1) 업무 방침에 기술된 공익 요인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경우의 증오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선호한다.

-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당함
- 피해자가 취약한 자임
- 해당 범죄의 동기가 인종이나 출신국, 출신 민족,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성적 지향, 기타 비슷한 요인을 근거로 한 편향이나 편견 또는 증오였음
- 해당 범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음

증오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Report to Crown Counsel)는 모두 행정 검사가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에게 보내 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 또는 지정된 고위 검사는 혐의 평가 완료 전에 해당 지역의 증오 범죄 담당 리소스 검사(Resource Crown Counsel on Hate Crimes)와 협의해야 한다.

A. 특정 증오 범죄 - 혐의 평가 및 법무부 장관의 동의

증오 선전 - 형법 제 318 조와 제 319 조

형법 제318조는 구별되는 집단 전체에 대한 학살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범죄를 다룬다. 제319조 (1)항은 공공 장소에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선동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그런 선동이 치안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소통 범죄를 다룬다. 제319조 (2)항은 구별되는 집단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사적인 대화 이외의 소통 범죄를 다룬다. 이 모든 조항은 “구별되는 집단”을 “피부색이나 인종, 종교, 출신국, 출신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정신 장애, 신체 장애”로 구별되는 대중 계층으로 정의한다. 이 중 어느 조항도 해당 언급이 실제 증오를 초래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동의 필요

형법 제 318 조와 제 319 조 (2)항에 따라 기소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무 차관보(Assistant Deputy Attorney General)는 이 필수 동의를 법무부 장관 대신할 권한이 있다.

기소 전, 행정 검사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의 동의 요청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중 1 인이 해당 결정과 권고를 검토하고 적합하다면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구한다.

증오가 동기인 기물 파손 - 종교 예배용 건조물과 구별되는 집단이 사용하는 건조물

형법 제430조 (4.1)항은 (4.101)항 (a)~(d)에 묘사된 건조물과 관련하여 기물 파손을 저지르되 그 기물 파손 행위의 “동기가 피부색이나, 인종, 종교, 출신국, 출신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정신장애, 신체 장애를 근거로 하는 편향이나 편견 또는 증오”인 경우의 선택적 심리 방법의 범죄(hybrid offence)를 다룬다. (4.101)항 (a)~(d)에 묘사된 건조물의 종류에는 주 용도가 종교 예배인 건물이나 구조물(및 그 건물이나 구조물의 터 안에 있거나 위에 있는 물체)(4.101항의 (a)) 또는 제318조 (4)항에 정의된 구별되는 집단이 주로 행정, 사고, 문화, 스포츠 활동이나 행사(4.101항의 (c))용 교육 기관(4.101항의 (b))으로 사용하거나 노인 주거(4.101항의 (d))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구조물(및 그 건물이나 구조물의 터 안에 있거나 위에 있는 물체)이 포함된다.

B. 증오가 동기인 모든 범죄 - 양형의 가중 요인

모든 범죄에 대한 양형 절차에서, 검사는 법원이 해당 범죄의 “동기가 인종이나 출신국, 출신 민족,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기타 비슷한 요인을 근거로 한 편향이나 편견 또는 증오”였다고 결정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해당 동기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증거가 인정되면 양형 시 해당 동기를 형법 제 718.2 조 (a)(i)항에 따라 법령상 부과하는 의무 가중 요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제 318 조나 제 319 조 (1)항, 제 319 조 (2)항, 제 430 조 (4.1)항에 따른 특정 범죄의 기소에서 해당 범죄의 요소 파악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편향이나 편견 또는 증오라는 범행 동기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러한 추가적 동기가 **형법 제 718.2 조 (a)(i)**항에 따른 가중 요인이라고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해당 범죄가 이미 증오 범죄이어도 별개의 가중 정황이 될 수 있다.

C.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와 지역 사회 피해 영향 진술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정보 제공(Victims of Crime – Providing Assistance and Information to, VIC 1)** 및 **취약한 피해자와 증인- 성인(Vulnerable Victims and Witnesses – Adults, VUL 1)** 업무 방침대로 양형 전에 **형법 제 722 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받도록 시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형법 제 722.2 조**에 따라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개인”이 지역 사회 피해 영향 진술서(Community Impact Statement)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피해 영향 진술서들은 선고 법원이 증오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D. 증오 선전 제거 - 대물 조항

형법 제 320 조와 **제 320.1 조**는 **대물(對物, in rem)** 조항을 구성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증오 선전물이 판매나 유통용으로 보관되어 있는 서면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증오 선전물이 대중에게 제공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증오 선전의 삭제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이 있다. 이 조항들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행정 검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의 동의 요청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 중 1 인이 해당 권고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법무 차관보의 동의를 구한다.

E. 대안 조치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업무 방침 **성인범에 대한 대안 조치(Alternative Measures for Adult Offenders, ALT 1)**와 **소년 사법- 재판 외 조치(Youth Criminal Justice Act – Extrajudicial Measures, YOU 1.4)**가 모든 증오 범죄에 적용된다. 이 방침들의 일반 규정 이외에도, 업무 방침 **ALT 1** 과 **YOU 1.4**에서는 증오 범죄 대안 조치 승인을 위한 특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ALT 1**에서 발췌).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은 대안 조치 고려 대상자 의뢰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대안 조치 보고서에 권고된 특정 대안 조치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증오 범죄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구별되는 개인 피해자가 상담을 받아야 하고 소원이 고려되어야 함
- 피고인에게 관련 범죄나 폭력의 전과가 없어야 함
- 피고인이 혐의를 받는 범죄의 근거가 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함
- 해당 범죄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성격의 것이 반드시 아니었어야 함